

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

1 사업개요

중·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, 노동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※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 건의사항('23.4.25.),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('23.8.) 반영

- 사업명 :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
- 추진근거 :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사업기간 : 2024년 1월~12월(단년도 계속사업)
- 예산안 : 도비 70억원 ※ 재원비율 : 도비 40%, 시·군비 40%, 자부담 20%
- 2024년 개선(안)

지원유형	2023년	2024년 개선(안)	비고
지식산업센터	■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■ 지원대상 확대 (준공 후 10년 → 7년) -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■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 건의사항('23.4.25.) 반영
소방시설	< 신 설 >	■ 지원유형(소방시설) 신설 - 지원한도 : 30백만원 이내 - 지원내용 : 경보설비, 무선 화재 감지기 등	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(이용욱의원, '23.8.25.)

□ 사업내용

연번	지원유형	지원한도(도비)	지 원 내 용
1	기반시설	2억원	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
2	노동환경	20백만원	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, 화상회의실 구축 등
3	지식산업센터	30백만원	노후 주차장·화장실, 공공시설물, 화상회의실 구축 등 ※ 준공 후 7년 이상
4	작업환경	10백만원	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적재대, 환기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
5	<신설> 소방시설	30백만원	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

□ 향후계획

- '24년 사업 수요조사(도→시군) : '23. 9.~10월
- '24년 사업 현장실태조사(도-시군, 표본조사) : '23. 10월
- 협의회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 : '23. 12.~ '24. 1월

2

사업별 지원기준

지원유형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요건	재원비율	지원한도
기반시설	중소기업 밀집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로 확·포장 ■ 상·하수도 ■ 소교량 ■ 우수관 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·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■ 참여기업 5개소 이상 ■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- 시설이 양호한 사업 - 사유지 사용승인·동의를 어려운 사업 - 총사업비 7억원 이상 및 연차별 추진 사업 	시·군 차등 보조율 적용	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노동환경	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(제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설치 및 개보수 ■ 화상회의실, 사내 교육장 <p>※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 ■ 총사업비가 10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■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-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- 무허가 건물 	도비 40% 시·군비 40% 자부담 20%	도비 20백 만원 이내 (기숙사 신 축의 경우, 도비 50백 만원 이내)

지원유형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요건	재원비율	지원한도
지식산업센터	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·보수 ■ 노화 기계설 설비 개보수 ■ 화상회의실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 ■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■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비 40%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·군비 40%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부담 20%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비 30백만원 이내</p>
작업환경	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작업공간 개보수(바닥, 천정, 벽면, 창호 등) ■ 적재대, 작업대, 컨베이어 작업대 ■ 환기·집진장치 ■ LED조명 설치(작업공간만 해당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■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-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- 무허가 건물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비 40%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·군비 40%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부담 20%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비 10백만원 이내</p>
<신설> 소방시설	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자동확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·개보수(설치 시설이 아닌, 일반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제외) ■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(사무실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로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■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-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- 무허가 건물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비 40%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·군비 40%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부담 20%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비 30백만원 이내</p>

1 기본시설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
지원내용	도로 확·포장, 상·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·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■ 참여기업 5개소 이상, 다수기업 우선 반영
재원비율	2024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
지원한도	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■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·동의를 완료된 사업 ■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%인 시·군 사업 ■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■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¹⁾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 ■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초 시·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■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■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

1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2 노동환경

구분	세부사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<p>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 설치 및 개·보수, 화상회의실, 사내 교육장 구축(공사비)</p> <p>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</p> <p>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</p> <p>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</p> <p>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</p> <p>- 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</p> <p>-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</p>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재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40%, 시·군비 40%, 자부담 20%
지원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20백만원,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(도비 25백만원, 시군비 20백만원 이내) ■ 기숙사 신축의 경우, 도비 50백만원, 시군비 5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총당 조건)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²⁾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³⁾, 어린이집 설치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2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3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

3 지식산업센터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지원내용	<p>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,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,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(공사비)</p> <p>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</p>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■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40%, 시·군비 40%, 자부담 20%
지원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30백만원, 시군비 3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총당 조건)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■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4] 작업환경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<p>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, LED조명 설치, 컨베이어 작업대</p> <p>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 설비,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(예) 작업대 + 설비 부착 = 주문제작</p>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40%, 시·군비 40%, 자부담 20%
지원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10백만원,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(도비 13백만원, 시군비 10백만원 이내)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5 <신설> 소방시설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 ■ 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·개보수 ■ 노후 전기배선 교체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 등 <p>※ 지원제외 :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(예) 일반 소화기, 간이소화용구 등</p>
지원요건	<p>(중소기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<p>(지식산업센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■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40%, 시·군비 40%, 자부담 20%
지원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비 30백만원, 시군비 30백만원 이내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□ 사업선정 시 유의사항(시·군)

○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조사 철저

- 사업계획서 미흡,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상정 불가
- 사업별 심사점수에 따른 시·군 우선순위 선정(선정심의 반영)

■ 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

① 최근 5년(2019년~2023년)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

- 사업 분야 중(기반, 노동, 지식, 작업) 한번이라도 지원내역 있는 기업 제외
(예) 2019년 A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최근 5년 수혜기업으로 사업신청 불가
2018년 B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5년 경과하여 사업신청 가능
※ 단, 동일 분야(노동) 사업은 지원 불가 → 다른 분야(작업) 사업 지원 가능

·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

(예)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,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, 9년전 3순위... 등

②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

③ 시·군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

- 시·군 추경예산 확보 불가로 인한 이월 방지, **2024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선정**

○ 사업대상의 인허가,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 여부 사전 확인

- 불법건축물 여부, 공장등록 여부(공장면적 500m² 이상일 경우)
- 도로 확포장,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사용 동의
- 기숙사 신축,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, 용적율, 건축물 용도

○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(기반, 노동, 지식, 작업) 중복 지원 불가

- ※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

※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
(예) 기숙사(노동), 바닥도장(작업) 지원 불가 / 기숙사(노동), 화장실 개보수(노동) 지원 가능
바닥도장(작업), 자동화재탐지설비(소방시설) 지원 가능

○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

- **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**(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, 소방시설)
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 확인
- 집행 시 시·군 담당자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
- 다음의 경우 **대체사업 발굴하여 도 변경승인 신청**
 - 사업포기 및 지원내용 변경 발생 시(구체적인 사유 명시)
 -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
-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
- 지원내용의 세부 수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 없이 변경 가능